

○李秉守委員 그런데 그것도 技術職으로 막연히 하지 말고 地方施設 技正 또는 地方工業 技正으로 아예 못을 박으면 어떻습니까?

○委員長 朴尙東 그것은 技術職으로, 行政職이 아니고 技術職으로 하면…….

이제 됐습니다. 委員님들 質疑는 終結되었기 때문에 柳準向委員의 勸議案에 再請있습니까?

(「再請이요」하는 委員 있음)

三淸 있습니까?

(「네」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考)

서울特別市淸掃事業本部設置條例(案)

제1조(설치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및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淸소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서울특별시淸소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淸소행정의 종합기획
2. 인력 및 장치관리
3. 쓰레기 수거, 자원 재활용의 추진
4. 淸소관련시설의 종합건설 및 관리계획 수립
5. 쓰레기수거, 위생매립, 소각처리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의 연구
6. 기타 淸소관련 업무

제3조(본부장) ①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본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산하사업소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하부기관) ①본부장 밑에 淸소연구소·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및 위생처리장을 둔다.

②淸소연구소장은 지방시설부기감, 淸소공업부기감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위생처리장장은 지방기계기사 또는 지방화공기사로 하며, 본부의 기구는 별표와 같다.

제5조(공무원)본부와 하부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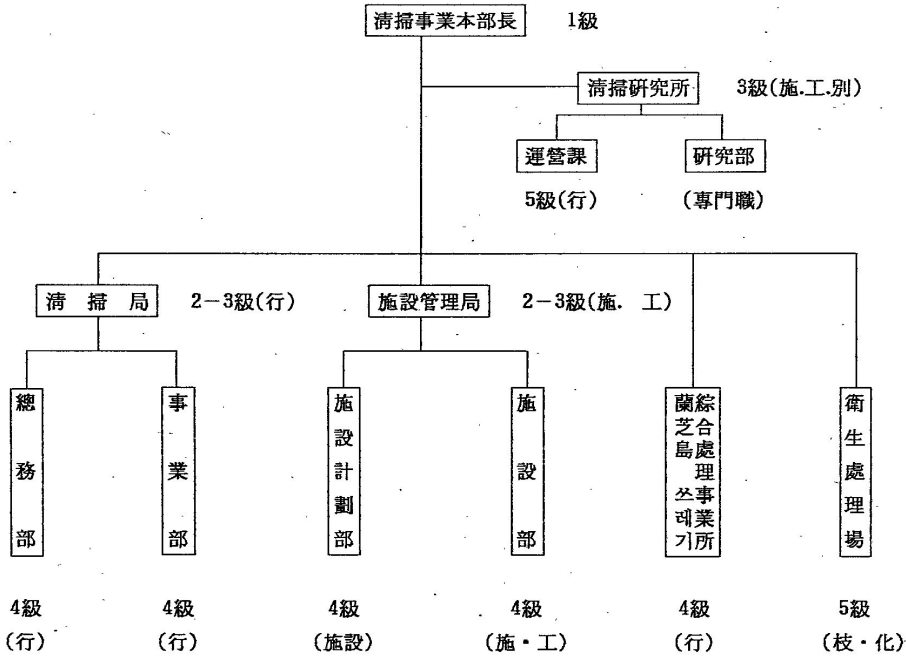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직제의 개정에 의하여 淸소 1, 2과가 폐지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당시 서울특별시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설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다음 페이지 계속)

機 構 (案)

○本部長 傘下 2局(4部), 1研究所, 2事業所



○清掃局：清掃行政의 綜合企劃, 人力 및 裝備管理, 積換場管理, 收去代行業體 指導監督 등

○施設管理局：清掃關係施設의 綜合計劃樹立 및 調整, 燒却場 등 清掃關係施設 建設・管理 등

○清掃研究所：燒却處理技術開發, 쓰레기 收去・埋立研究改善, 蘭芝島活用方案, 處理研究 등

○委員長 朴尙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號 案件 서울特別市財政投融资基金設置條例案에 대한 質疑를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委員長님들 가능한한 質疑하는 過程에 고루 고루 여러 委員長들께서 重複되지 않게 質疑를 해 주시면 우리 會議에 能率을 기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投融资基金設置條例案에 대한 것은 3日前에도 이 問題에 대한 것을 深度있게 質疑를 했습니다. 오늘 財政投融资基金設置條例案도 終結지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內容의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明鎭委員!

○崔明鎭委員 그제 本 委員會에서 指摘된 財政投融资基金設置條例案의 違法 不當한 條項들 削除 내지 改正 方向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朴尙東 企劃管理室長께서는, 지난번 質疑를 통해서 서울特別市財政投融资基金設置條例案에 대한 質疑를 했습니다. 그 內容에 대해서, 그 동안 檢討하신 內容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